

의안번호	제 103 호
의 결 연 월 일	2018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

발 의 자	연종석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18년 11월 21일

# 충청북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

(연중석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03
----------	-----

발의연월일 : 2018년 11월 21일

발의자 : 연중석, 이수완, 윤남진,  
김기창, 박병진, 오영탁,  
서동학

## 1. 제안이유

도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 상위법령인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빛공해 방지조례의 목적, 조명기구 정의 및 범위를 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빛공해 관리 중요사항 심의를 위한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다. 빛방사 허용기준의 강화 필요지역과 선정 절차, 조명기구 설치 지도 권고와 허용기준의 적용 제외시 승인절차를 정함(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

라.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심의사항을 정함(안 제10조)

마. 빛공해 방지 시책 추진 관련 행·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1조)

바. 빛공해 방지 우수자, 조명기구 선정 시상 (안 제12조)

### 3. 조례안 : 붙임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협의 : 환경산림국 기후대기과와 협의

라. 입법예고 : '18. 11. 15. ~ '18. 11. 20. (의회홈페이지)

## 충청북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간조명”이란 안전하고 원활한 야간활동을 위하여 특정 공간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를 말한다.
2. “광고조명”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에 설치되거나 광고를 목적으로 그 옥외광고물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를 말한다.
3. “장식조명”이란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시설물, 조형물 또는 자연환경 등을 장식할 목적으로 그 외관에 설치되거나 외관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를 말한다.

제3조(조명기구의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명기구에 대해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비추는 공간조명

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공간

나. 옥외 체육공간

2. 영 제2조제2호에 따른 광고조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장식하기 위한 장식조명

가. 영 제2조제3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건축물 및 시설물

나.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등록문화재

다.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제4항에 따른 미술작품

제4조(빛공해방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도지사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빛공해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빛공해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빛공해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충청북도의회 의원

2. 도 소속 관계공무원

3. 인공조명 등 빛공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위촉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⑦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빛공해 소관 업무 부서장이 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9조에 따른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및 법 제10조에 따른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해제·변경
3.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 제외에 관한 사항
4. 영 제5조에 따른 빛환경 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의 강화에 관한 사항
6. 규칙 제10조에 따른 빛공해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
7. 빛공해방지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자치법규 및 제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
8. 빛공해 방지 사업 추진을 위한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도지사가 빛공해방지대책 추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기관 및 단체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빛방사허용기준의 강화)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해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빛방사허용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천문관측 시설의 주변 지역
2. 철새 도래지
3.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역 및 장소
4. 그 밖에 생태계보호를 위해 빛방사허용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빛방사허용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하려면 해당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강화대상 조명환경 관리구역 현황과 강화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 및 권고) 도지사는 옥외공간에 조명기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규칙 제6조에 따라 빛방사허용기준에 따라 설치하도록 지도 및 권고를 할 수 있다.

제9조(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 제외) 도지사는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 제외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0조(빛공해환경영향평가) ① 도지사는 법 제16조에 따른 빛공해환경영향평가 업무의 일부를 전문인력과 장비 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빛공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규칙 제10조에 따른 평가 항목·범위 등의 세부사항
2. 빛공해환경영향평가 실시 대상지역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빛공해환경영향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1조(지원제도) ① 도지사는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 조명기구를

정비하는 경우 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명환경 관리지역 중 자연환경과 주거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명기구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6조의 빛방사허용기준 등을 반영한 조명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빛공해 개선을 위하여 토지·건축물 소유자 등과 조명개선 협정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우수 조명에 대한 선정 등) 도지사는 빛공해 방지에 기여하는 바가 큰 사람 또는 우수 조명기구를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 법령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5조(시·도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빛공해방지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의 빛공해 방지를 위한 계획(이하 "시·도빛공해방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빛공해방지지역위원회) ① 시·도지사는 시·도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시행과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지정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빛공해방지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9조(조명환경관리구역) ① 시·도지사는 빛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1종 조명환경관리구역: 과도한 인공조명이 자연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
2. 제2종 조명환경관리구역: 과도한 인공조명이 농림수산업의 영위 및 동물·식물의 생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
3. 제3종 조명환경관리구역: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인공조명이 필요한 구역으로서 과도한 인공조명이 국민의 주거생활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

4. 제4종 조명환경관리구역: 상업활동을 위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인공조명이 필요한 구역으로서 과도한 인공조명이 국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

② 시·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토지이용현황,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지역주민과 환경에 대한 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 지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의 빛환경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빛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시·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⑦ 환경부장관은 조명환경관리구역의 환경친화적인 관리·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지역에 대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른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해제) ① 시·도지사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목적이 상실되거나 조명환경관리구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을 해제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을 해제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해제 또는 변경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빛방사허용기준) ①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9조제1항 각 호의 조명환경관리구역에서 허용되는 빛방사 허용기준(이하 "빛방사허용기준"이라 한다)을 에너지 절약과 기술의 발전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7>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제1항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으로는 빛공해의 방지 또는 쾌적한 환경의 조성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1항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보다 엄격한 빛방사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제12조(빛방사허용기준의 준수 의무 등)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조명환경관리구역에 있는 조명기구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제11조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을 지켜야 한다. 다만, 국내외 행사, 축제 또는 관광진흥 등을 목적으로 한정된 기간 동안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27.>

제16조(빛공해환경영향평가) 시·도지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역의 빛환경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을 3년마다 1회 이상 평가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제5조(빛환경 관리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수립하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의 빛환경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계획(이하 "빛환경 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명환경관리구역의 빛환경 관리 목표 및 기본방향
2. 조명환경관리구역의 현황 및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이하 "빛공해"라 한다) 실태
3.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조명기구에 대한 친환경적 관리방안
4. 조명환경관리구역의 빛환경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술

적·재정적 지원 방안

5. 그 밖에 빛공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시·도지사는 빛환경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은 후 법 제7조에 따른 빛공해방지지역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빛환경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환경부장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 제외) ①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 서류를 조명기구 설치 예정일의 14일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 제외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제6조(빛방사허용기준) ① 법 제11조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삭제 <2016.7.27.>

③ 시·도지사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엄격한 기준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7.27.>

제10조(빛공해환경영향평가) ① 법 제16조에 따른 빛공해환경영향평가의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지역환경 현황

가. 자연 및 생활 환경 현황

나. 토지이용 현황 및 지역개발 계획

다. 조명기구 설치·관리 및 빛공해 현황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빛공해 영향분석

가. 인공조명이 동물·식물, 경관 등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나. 인공조명이 주민의 주거, 안전, 건강 등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

다. 인공조명이 농림수산업의 영위에 미치는 영향

라. 인공조명이 천체관측에 미치는 영향

3. 그 밖에 빛공해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시·도지사는 법 제16조에 따라 빛공해환경영향평가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빛공해환경영향평가의 절차 등 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별표]

**빛방사허용기준** (제6조제1항 관련)

1. 영 제2조제1호의 조명기구

측정기준 \ 구분	적용시간	기준값	조명환경관리구역				단위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주거지 연직면 조도	해진 후 60분 ~ 해뜨기 전 60분	최대값	10 이하			25 이하	lx (lm/m <sup>2</sup> )

2. 영 제2조제2호의 조명기구

가.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전광류 광고물

측정기준 \ 구분	적용시간	기준값	조명환경관리구역				단위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주거지 연직면 조도	해진 후 60분 ~ 해뜨기 전 60분	최대값	10 이하			25 이하	lx (lm/m <sup>2</sup> )
발광표면 휘도	해진 후 60분 ~ 24:00	평균값	400 이하	800 이하	1000 이하	1500 이하	cd/m <sup>2</sup>
	24:00 ~ 해뜨기 전 60분		50 이하	400 이하	800 이하	1000 이하	

나. 그 밖의 조명기구

측정기준 \ 구분	적용시간	기준값	조명환경관리구역				단위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발광표면 휘도	해진 후 60분 ~ 해뜨기 전 60분	최대값	50 이하	400 이하	800 이하	1000 이하	cd/m <sup>2</sup>

3. 영 제2조제3호의 조명기구

측정기준 \ 구분	적용시간	기준값	조명환경관리구역				단위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발광표면 휘도	해진 후 60분 ~ 해뜨기 전 60분	평균값	5 이하		15 이하	25 이하	cd/m <sup>2</sup>
		최대값	20 이하	60 이하	180 이하	300 이하	

비고

가. 조도 및 휘도의 뜻은 한국산업표준 KS A 3012(광학용어)에 따른다.

나. "주거지 연직면 조도"란 해당 조명기구로부터 방사되는 빛이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의 창면을 비출 때 그 창면에서의 연직면(鉛直面) 조도를 말한다. 이 경우 측정 대상 창면이 해당 조명기구가 설치된 조명환경관리구역 바깥에 위치할 때에는 조명기구가 설치된 조명환경관리구역의 빛방사허용기준을 적용한다.

다. "전광류 광고물"이란 영 제2조제2호에 따른 조명기구 중 발광(發光) 다이오드, 액정표시장치 등 전자식 발광기구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여 표시 내용이 수시로 변하는 문자 또는 모양을 나타내는 조명기구를 말한다.

라.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전광류 광고물의 주거지 연직면 조도는 연출주기, 휘도 변화정도 등을 고려하여 2회 이상 측정한 연직면 조도 중 최대값을 기준으로 한다.

마. "발광표면"은 조명기구 및 그 조명기구가 광고 또는 장식을 목적으로 비추는 사물의 바깥면을 말한다. 이 경우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조명의 경우에는 연출주기 동안 발광하는 모든 부위를 포함한다.

바. 빛공해의 측정 및 평가 기준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제3항 단서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에 의해 설치되는 조명기구에 대해서는 설치지역에 관계없이 제4종의 빛방사허용기준을 적용한다.

# 충청북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 비용추계서

## I. 비용추계 요약

###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가. 제정안에 따라 도지사는 빛공해 관리에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빛공해방지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을 규정함(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
- 나. 또한, 빛공해환경영향평가 업무를 위해 기관 또는 단체에게 대행(안 제10조)하고, 빛공해 방지를 위한 조명기구 정비 지원 및 재정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안 제11조).

### 2. 비용추계의 결과

#### 가. 추계의 전제

- 1) 추계시점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추계를 실시함.
- 2) 빛공해 환경영향 평가는 3년마다 실시함.

#### 나. 추계의 결과

-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2019년도에는 2,000천원이 소요되고, 향후 5년간 도 소요예산 460,000천원이 추계됨.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 시행시 소요예산

(단위: 천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
위원회 참석수당 (안 제4조)	2,000	2,000	2,000	2,000	2,000	10,000
빛공해환경영향평가 (도비50%) (안 제10조)	-	-	50,000	-	-	50,000
조명정비사업 지원 (안 제11조)	-	100,000	100,000	100,000	100,000	400,000
<b>합 계</b>	<b>2,000</b>	<b>102,000</b>	<b>152,000</b>	<b>102,000</b>	<b>102,000</b>	<b>460,000</b>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16조에 따라 빛공해 환경영향 평가는 3년마다 1회 실시

※ 재원부담비율 : 빛공해환경영향평가(국비 50, 도비 50),

##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빛공해 관리에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빛공해방지위원회를 9명 이내의 위원으로(위촉직 위원을 2분의 1이상) 구성하여 수당과 여비 지급에 대한 비용추계 검토가 필요함.
  - ※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촉직 외부위원에 한하여 참석수당으로 2시간이상 100천원 추계('18년도 충청북도 예산편성 기준경비)
    - 빛공해방지위원회 연2회의 정기회와 연1회의 임시회 소집시  
: 100천원 × 5명(민간위원) × 연4회 회의 = 2,000천원
  
- 빛 환경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 평가를 위해 빛 공해 환경영향 평가 연구용역 실시에 대한 비용추계 검토가 필요함.
  - ※ 2018년 충청북도 빛공해 환경영향 평가 연구용역비 100,000천원(국비50%, 도비 50%) 예산 기준 적용하여 충청북도(11개 시·군) 환경영향 평가 연구 용역비 50,000천원 추계  
(빛공해 환경영향 평가 연구 용역비, 국비 50%, 도비 50%)
  
- 빛공해 방지를 위한 조명기구 개선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의 비용추계 검토가 필요함.
  - ※ 가로등(LED) 교체 등 좋은 빛 환경 조성 추진 관련 사업비 지원 (도비 50%)
    - 4개 사업 × 25,000천원 = 100,000천원
  
- 종합적으로, 동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향후 5년간 위원회 참석수당은 10,000천원, 환경영향평가는 50,000천원, 조명개선사업 발굴·추진은 4,000,000천원으로 총 소요예산 46,000천원이 추계됨.